

요 약

보험사기죄에 대한 검찰의 처분 결과에 의하면, 일반 사기죄에 비해 구약식을 통해 벌금형으로 종결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비중이 높음. 제1심 형사법원의 선고 결과를 보면, 보험사기죄의 경우 일반 사기죄에 비해 벌금형이 선고되는 비중이 높고 징역형 실형이 선고되는 비중이 낮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살리고 실효성 있게 집행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기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 및 처벌이 뒷받침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가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음

-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적발 현황에 의하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매년 증가하여 2022년에는 1조 818억 원에 달하였음(전년 대비 14.7% ↑)¹⁾
 - 2022년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102,679명(전년 대비 5.2% ↑)이었으며, 1인당 평균 적발 금액도 10.5백만 원으로 고액화 추세에 있음
- 그에 따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어, 다수의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기도 하였음
 - 제20대 국회(2016년 5월~2020년 5월)에서 총 8건의 개정안이 발의되었다가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음
 - 제21대 국회(2020년 5월~)에서도 총 17건의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임
 -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안들에 대해서는 2023년 7월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이 이루어졌으며,²⁾ 향후 해당 의결 내용을 토대로 정무위원회가 대안을 마련하여 전체회의에 보고하고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 의결 순서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보험사기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및 그로 인한 낮은 죄의식과 관대한 사회 분위기 등이 보험사기를 조장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많음³⁾
 - 이에 실제 우리나라에서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 현황이 어떠한지 확인해보고자 하며, 이하에서는 최근 통계를 토대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이하, 편의상 ‘보험사기죄’라 함)에 대한 검찰의 처분 현황 및 법원의 선고 현황을 살펴보겠음

1)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3. 3. 24), “2022년 보험사기 적발현황 및 향후 계획”

2) 해당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에 의하면, 금융당국의 자료제공 요청권 도입, 보험업 관련 종사자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명단 공표, 보험계약자의 보험사기 유죄 확정판결 시 보험금 반환 의무 도입, 보험사기행위 알선 금지 등 주요 사항에 대해 개정이 합의되었음

3) 국민일보(2022. 1. 26), “이러니 사기치지... 십수억 보험사기범도 형량은 2년 8개월” 등

○ 보험사기죄에 대한 검찰의 처분 결과에 의하면, 일반 사기죄에 비하여 구약식을 통해 벌금형으로 종결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비중이 높다고 볼 수 있음

- 검사는 사건 수사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데, 검사의 기소에는 ① 피고인이 법정에서 정식재판을 받는 것을 청구하는 공판청구(구공판), ② 약식절차에 의해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을 토대로 법원이 피고인에게 처벌을 내릴 수 있는 약식재판을 청구하는 약식명령청구(구약식)가 있음
 - 검사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구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상 구약식을 활용함
- 검사가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불기소처분을 내리는데, 불기소처분에는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기소중지, 기소유예 등이 있음
 - 이 중에서 기소유예 처분은, 혐의가 인정되고 증거도 충분하여 기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의 연령이나 범죄의 성질 등 여러 상황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임
- 대검찰청 범죄분석 통계에 의하면, 보험사기죄의 경우 일반 사기죄와 비교했을 때 기소되는 경우 중에서 구약식의 비중이 매우 높고 불기소처분 중 기소유예의 비중이 매우 높은 모습을 보임
 - 2020년과 2021년 보험사기죄 및 일반 사기죄에 대한 범죄자 처분 결과⁴⁾에 의하면, 보험사기죄에서는 기소되는 경우 중에서 정식재판 없이 벌금형으로 종결(구약식)되는 경우의 비중이 50%를 넘으며, 이는 일반 사기죄에서의 30%대 수준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또한 보험사기죄의 경우 불기소처분 중에서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기소를 하지 않기로 하는 기소유예 처분의 비중이 일반 사기죄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음

〈표 1〉 보험사기죄 및 사기죄 범죄자 처분 결과(2020년 및 2021년)

(단위: 건, %)

연도	구분	계	기소			불기소					기타 ³⁾
			소계	구공판	구약식 (비중) ¹⁾	소계	기소유예 (비중) ²⁾	혐의 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2020	사기	329,329	82,771	53,741	29,030 (35.1%)	115,119	13,595 (11.8%)	95,110	26	6,388	131,439
	보험 사기	11,780	4,548	1,908	2,640 (58.0%)	5,232	2,741 (52.4%)	2,427	1	63	2,000
2021	사기	204,929	53,369	37,376	15,993 (30.0%)	11,696	6,131 (52.4%)	4,752	-	813	139,864
	보험 사기	10,975	3,555	1,721	1,834 (51.6%)	2,337	2,020 (86.4%)	302	-	15	5,083

주: 1) 기소된 경우 중 구약식의 비중

2) 불기소된 경우 중 기소유예의 비중

3) 소년보호송치, 가정보호송치,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보완수사요구, 공소보류 등이 해당하고, 2021 수치에는 사법경찰관의 결정(사법경찰의 불송치, 수사중지) 항목이 포함됨

자료: 대검찰청 범죄분석 통계를 토대로 정리함

4) 자연인인 피의자에 대한 검찰의 종국 처분 결과임

○ 보험사기죄에 대한 제1심 형사법원의 선고 결과에 의하면, 일반 사기죄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벌금형이 선고되는 비중이 높고 징역형 실형이 선고되는 비중은 낮다고 볼 수 있음

- 제1심 형사재판에서 처리되는 결과 중 벌금형 및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비중을 보면, 일반 사기죄가 10% 미만 수준인 것에 비하여 보험사기죄는 3~40%대 수준임
- 또한 일반 사기죄에서는 유기징역의 실형이 선고되는 비중이 50%대 후반 수준으로 비교적 높은 편인 반면 보험사기죄의 경우에는 20% 대로 낮은 것을 알 수 있음

〈표 2〉 보험사기죄 및 사기죄 선고 결과(제1심, 2020년 및 2021년)

(단위: 건, %)

연도	구분	계	자유형		재산형 (비중)	재산형 집행유예 (비중)	무죄 (비중)	기타 ¹⁾
			유기징역 (비중)	집행유예 (비중)				
2020	사기	44,056	25,732 (58.4%)	9,732 (22.1%)	4,222 (9.6%)	121 (0.3%)	1,127 (2.6%)	3,122
	보험 사기	1,310	310 (23.7%)	393 (30.0%)	459 (35.0%)	18 (1.4%)	42 (3.2%)	88
2021	사기	44,949	26,656 (59.3%)	10,395 (23.1%)	3,789 (8.4%)	125 (0.3%)	1,309 (2.9%)	2,675
	보험 사기	2,011	406 (20.2%)	542 (27.0%)	880 (43.8%)	10 (0.5%)	61 (3.0%)	112

주: 1) 선고유예, 형의 면제, 면소, 공소기각, 소년부송치, 가정보호사건송치, 무기징역, 사형 등이 포함됨
자료: 법원 사법연감 통계를 토대로 정리함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살리고 실효성 있게 집행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기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 및 처벌이 뒷받침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실제로 보험사기죄에 대한 검찰의 처분 현황 및 법원에서의 선고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 사기죄와 비교하여 보더라도 그 처벌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겠음⁵⁾
- 우리나라에서는 보험사기죄에 대해 일반 사기죄와 별도의 범죄로 구분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보험사기를 감축 및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제정 및 시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엄정한 수사 및 처벌이 뒷받침될 수 있어야 할 것임
 - 개별 사안에서의 상황만 놓고 본다면, (특히 연성 사기의 경우) 범행 수법이나 피해 금액 등의 측면에서 다른 범죄에 비해 죄질이 불량한 편이 아니라고 보여질 수 있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의 사정까지 감안되면 처벌 수준이 낮게 정해질 수 있을 것임
 - 그런데 보험사기죄에 대해서는 개별 행위나 피고인의 정상 자체만 놓고 일반 사기죄와 동일한 잣대와 기준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험제도를 이용한 사기’라는 특수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5) 처벌 수준은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 죄질이나 정상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어서 보험사기죄와 일반 사기죄의 처벌 수준을 정확하게 비교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나, 전체 통계의 수치를 비교하면 그러함

- 즉, 보험사기죄의 경우 특정 피해자(보험회사)의 손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 집단 전체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고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해야 하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범죄이므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기본적으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것이 바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입법 취지인 것임
- 이와 관련하여, 보험사기죄에 대한 수사기준과 양형기준을 별도로 정립하고 해당 기준에서 보험사기죄에 대한 엄중 처벌의 원칙을 명시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임⁶⁾

6) 참고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는 살인, 뇌물, 강도, 횡령·배임, 사기, 마약, 증권·금융, 식품·보건, 성범죄, 폭력, 교통, 명예훼손, 선거, 조세, 사행성·게임물, 변호사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환경범죄 등 46개 범죄군에 대한 양형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 중 사기에 대한 양형기준은 형법상 사기죄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고 보험사기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됨. 이에, 보험사기죄에 대한 별도의 양형기준 등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것임